

한국원자력학회 정관

제 정	1981. 09. 01.
개 정	1983. 01. 25.
개 정	1993. 11. 30.
개 정	1995. 12. 21.
개 정	1998. 11. 23.
개 정	2000. 12. 08.
개 정	2003. 02. 13.
개 정	2005. 12. 01.
전문개정	2007. 11. 26.
개 정	2008. 12. 04.
개 정	2009. 11. 10.
개 정	2013. 11. 15.
개 정	2015. 11. 09.
개 정	2017. 11. 06.
개 정	2019. 11. 05.
개 정	2020. 11. 10.
개 정	2022. 10. 26.
개 정	2023. 05. 16.
개 정	2025. 11. 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11. 05. 개정)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Korean Nuclear Society)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회와 강연회의 개최
2. 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산학연과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협조 증진

4. 원자력기술에 관한 자체·수탁 연구, 자문 및 평가
5. 학회 활동에 관한 포상 (2009. 11. 10. 신설)
6. 원자력에 관한 장학사업
7. 기타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이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이 법인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지부 및 분회) ①학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지부에는 지부장, 분회에는 분회장을 둔다. 지부 및 분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지부 및 분회는 지부 및 분회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규약은 학회의 목적과 정관·시행세칙 및 각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학회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 원자력공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및 원자력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원자력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한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특별회원 : 학회의 사업에 많은 찬조를 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결정한다.
3. 명예회원 :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결정한다.
4. 원로회원 : 정회원중 만 65세이상인 자로 하며, 학회행사시 우선적으로 초청

되며 행사참가 비용을 면제한다.

5. 학생회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원자력공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중에 있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 년회비 및 평생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재적평의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020. 11. 10. 개정)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내 (2025. 11. 12. 개정)
4. 감 사 2명
5. 이 사 20명 이내 (2025. 11. 12. 개정)

제13조 (임원의 임기 등)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③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재적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회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최연장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회무를 의결하고 이사회나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④학회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자문을 받고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성격 및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여하기로 의결한 사항

(2020. 11. 10. 개정)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 11. 10. 개정)

②회장은 인터넷 장치를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2020. 11. 10. 신설)

③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0. 11. 10. 신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 의결 참여 제외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3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정관 규칙의 개정 또는 개정안과 지부·분회 설치 등의 승인
3. 중요 사무보고 청취 및 자문

제24조 (평의원회 구성 및 평의원 선출) ①평의원회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연구회장
3. 지부장(분회장 포함)
4. 회장을 역임한 자(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한다)
5. 특별회원 중 학회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회원사의 대표 또는 단체장으로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회원

③선출직 평의원은 170명 이상 200명 이내로 한다.

④선출직 평의원은 120명의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으로 구분하며, 그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직선평의원

가. 이사회에서 240명 이내의 평의원 후보를 선정하여 평의원 온라인투표시스템 안내를 정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나. 정회원은 그 중 80인 이내를 선정, 평의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출 당해 연도 7월 31일 마감까지 20일전부터 투표한다.

다. 학회는 평의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라 평의원 후보 중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순으로 120명의 직선평의원을 확정하고(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당선된 것으로 한다), 8월 10일까지 해당 평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0. 11. 10. 개정)

2. 간선평의원

가. 직선평의원은 평의원으로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3항의 선출직 평의원 범위내에서 간선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평의원 선출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출직 평의원의 수가 120인 이하로 되지 않는 한 보선하지 않는다.

제25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26조 (의결정족수) ①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 11. 10. 개정)

②회장은 인터넷 장치를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2020. 11. 10. 신설)

③평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평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0. 11. 10. 신설)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 경우 이사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말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
6.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회장은 인터넷 장치를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2020. 11. 10. 신설)

③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연구회 (2025. 11. 12. 개정)

제33조 (연구회) ①제4조의 사업 중 국내외 학술회, 강연회 및 전문기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연구회를 둔다.

②연구회에는 연구회장을 두며 연구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에서 정한다.

제 8 장 편집위원회

제34조 (편집위원회) ①제4조 제2호의 사업 중 학회지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009. 11. 10. 개정)

②편집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 임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9 장 포상 및 장학위원회 (2009. 11. 10. 개정)

제35조 (포상 및 장학위원회) ①제4조 제5호에 의한 수상자 선정 및 제4조 제6호에
의한 장학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 및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9. 11. 10. 개정)

②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임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2009. 11. 10. 신설)

제36조 (위원회의 기능) (2009. 11. 10. 삭제)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2009. 11. 10. 삭제)

제38조 (장학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2009. 11. 10. 삭제)

제39조 (임기) (2009. 11. 10. 삭제)

제 10 장 원자력이슈위원회 및 원자력소통위원회 (2022.10.26. 개정)

제40조 (원자력이슈위원회 및 원자력소통위원회)

- ①국내외 원자력관련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슈위원회를 둔다.
- ②국내외 원자력관련 현안에 대하여 학회의 공식적인 대외 소통 기구로서 원자력소통위원회를 둔다.
- ③원자력이슈위원회 및 원자력소통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 임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11 장 기타 조직 등

제41조 (연구소 등) ①회장은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학회 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특정업무가 계속하는 기간 동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 (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12 장 자산 및 회계

제43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원조금
3. 기업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5. 기타

제43조의2 (기부금 등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 (<https://www.kns.org>)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2020. 11. 10. 신설)

제44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5조 (세입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전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6조 (결산) ①회장은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장 보 칙

제48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9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50조 (정관 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시행세칙 등) ①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규정) 정관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경제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기타

제54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 장	안 세 희	서대문구 연희동 421-60	2 년
부 회 장	김 선 창	성동구 광장동 산 23번지 워커힐 아파트 53동 1001호	2 년
	임 용 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11동 504호	2 년
	차 종 희	영등포구 여의도동 1045 시범아파트 12동 102호	2 년
감 사	육 종 철	성북구 동선동 3가 250번지	2 년
	윤 용 구	강남구 방배동 909 삼호아파트 11동 602호	2 년
총무이사	김 성 년	용산구 이촌동 300-11 왕궁아파트 4동 308호	2 년
	최 장 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9 미성아파트 B동 1001호	2 년
재무이사	이 근 배	성북구 장위동 180-60	2 년
	전 재 풍	강동구 잠실 6동 장미 아파트 15동 1305호	2 년
사업이사	김 필 규	강남구 논현동 32-34 경복아파트 B동 402호	2 년
	전 풍 일	용산구 이촌동 300-11 왕궁아파트 4동 309호	2 년
편집이사	이 은 철	관악구 봉천 7동 244-2 교수아파트 가동 301호	2 년
	채 성 기	용산구 이촌동 300-11	2 년

왕궁아파트 3동 403호

부 칙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